

제 746 호
1980. 1.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정산천
편집 : 문화공보관 심계섭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보

차 례

◎ 조 례		
제 1389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증개정.....	3
제 1390 호 :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	3
제 1391 호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중요재산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	4
◎ 규 칙		
제 183B 호 :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증개정규칙.....	5
◎ 훈 령		
제 519 호 :	서울특별시소방항공대 운영규정.....	5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무원서포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사

제 1 호 :	도시 계획시설 (도로)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12
제 2 호 :	도시 계획사업 (도로) 실시 계획 허가	12
제 3 호 :	도시 계획시설 (학교) 결정	14
제 4 호 :	도시 계획시설 (공항)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14
제 5 호 :	도시 계획시설 (시장) 지적 승인	15
제 6 호 :	도시 계획시설 (시장) 지적 승인	15
제 7 호 :	도시 계획시설 (시장, 도로) 지적 승인	16
제 8 호 :	도시 계획시설 (학교) 지적 승인	16
제 9 호 :	도시 계획사업 (도로) 시행 허가 고시	17
제 10 호 :	도시 계획시설 (여객 자동차정류장 및 도로) 변경 결정	18

◎ 공 고

제 1 호 :	청계천 7 가재 개발사업 시행 기간 변경 공람 공고	19
제 2 호 :	시장 개설 허가 공고	21
제 3 호 :	도시 계획사업 (학교) 실시 계획 공람 공고	21
제 4 호 :	도시 계획사업 (하수도 및 도로) 실시 계획 공람 공고	21
제 5 호 :	KS 표시 허가 취소 처분 공고	23
제 6 호 :	KS 표시 허가 취소 처분 공고	23
제 7 호 :	도시 계획사업 (화물 자동차정류장) 공사 완료 공고	24
제 10 호 :	도시 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완료 공고	24
제 11 호 :	도시 계획사업 (공용외청사) 완료 공고	25
제 14 호 :	KS 표시 허가 취소 공고	25
제 1 호 (교육위원회 공고) :	교육장무원 공채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2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중 개정조례중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정 정 상 칙
1980. 1. 10.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8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운임제도) ①지하철운임은 통산거리 비례제에 의하여 승차거리 8km까지는 기본운임 80원을 수수하고 8km초과하는 1km마다 5원 32전을 가산 수수한다.

②운임을 계산할때의 거리산정에 있어 1km미만 단수는 실제거리로 계

산하고 운임 및 부과운인 산정은 5원이만은 버리고 5원이상은 1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중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정 정 상 칙
1980. 1. 10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90 호

서울특별시오물청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정 화 조 청 소 요 금

인 조 별	용 량 (㎥)	오 니 수 거 비	조 내 청 소 비	정 소 요 금
15	0.75	5,500	2,400	7,900
20	1.25	6,200	2,800	9,000
30	2.25	8,500	6,300	14,800
40	3.25	12,300	6,800	19,100

인 조 별	용 량 (㎡)	으 니 수 거 비	조 내 청 소 비	청 소 요 금
50	4.25	16,200	7,200	23,400
60	5.25	19,600	8,300	27,900
70	6.25	22,800	9,430	32,200
80	7.25	26,300	10,900	37,200
90	8.25	29,900	12,200	42,100
100	9.25	33,600	13,500	47,100
150	14.25	53,000	19,200	72,100
200	19.25	72,300	25,000	97,300
250	24.25	92,900	31,100	124,000
300	29.25	113,500	37,200	150,700
400	39.25	155,000	49,800	204,800
500	49.25	198,200	62,600	260,800
600	59.25	238,600	71,700	310,300
700	69.25	279,000	80,600	359,600
800	79.25	318,900	90,000	408,900
900	89.25	359,200	99,000	458,200
1,000	99.25	400,300	107,700	508,000
1,500	149.25	601,800	145,600	747,400
2,000	199.25	803,200	183,500	986,700
2,500	244.25	1,004,500	214,400	1,218,900
3,000	299.25	1,205,800	245,200	1,451,000
4,000	399.25	1,610,000	290,800	1,900,800
5,000	499.25	2,011,400	324,700	2,336,100

문교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조례 제 1391 호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
 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중요
 재산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1980. 1. 16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회 교육감 이 장 갑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요재산의 범위)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1건당 예상가격 5,000 만원 이상의 재산 다만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 이상의 재산(예상가격 5,000 만원이하포함)

부 칙 (1980. 1. 16)

이 조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1979. 12. .

◎ 서울특별시규칙제 1838 호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 ② 전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동장의 퇴직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과 6월 사이에 속하는 경우에는 6월 30 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속하

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 8 조 제 3 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 10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9. . .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 서울특별시훈령제 519 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로 산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항공대) ①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에 항공대를 두고 항공대에는 대장 1인을 둔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의 명을 받아 항공대를 운영하며,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원의 비행 및 정비업무의 지정
2. 대원의 비행훈련 및 정비 등 기술교육 실시
3. 항공안전관리 및 운항감독
4. 항공기 정비관리 감독
5. 항공기정비장(修護場) 시설관리

③항공대에 행정반, 운항반, 정비반을 두고 반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의 같다

1. 행정반
 - 가. 서무에 관한 사항
 - 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다. 타반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운항반
 - 가. 부여된 비행업무 수행
 - 나. 항공기 운항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반
 - 가.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 나. 항공기 정비관리
 - 다. 감항검사

제 3 조 (임 무) ①항공대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의 화재발생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명구조
2. 제한된 화재진압
3. 공중(空中)지휘통제
4. 소방요원의 공중수송
5. 능력범위내에서의 소방장비 운항
6. 공중조명 및 피난유도

②항공대는 각종 재난의 방지 및 시정업무(市政業務)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특명사항 수행
2. 공중방역 및 방제
3. 무허가전물단속 및 항공사진촬영
4. 홍수동 침수지역 정찰 및 구조활동
5.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공중 단속 및 조사활동
6. 교통정보제공 및 공중교통통제
7. 계몽, 선도, 보도를 통한 공중 방송 및 전단살포
8. 민방위훈련 지원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의 목적으로는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항공기의 운항승인) ①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제 1 부시장의 승인을,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등 긴급을 요하는 운항일 때는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긴급상황의 발생으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호파장, 지령실장 또는 당직관의 명에 의하여 운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비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 비행 및 기술유지를 위한 훈련비행은 항공대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제 5 조 (항공기 운항의 우선) ㉠항공기 운항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시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2. 인명구조등 소방훈련
3. 시험비행 및 훈련비행
4. 기타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

㉡제한된 수의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대의 항공기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낭만을 비치하고 항시 대기하여야 한다.

제 6 조 (항공기 운항수칙)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상호간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20 미터이상의 안전거리유지
2. 무선교신 및 항로유지 (이착륙 또는 항공중이거나 관제기관 없는 곳에서의 경계통신 유지)
3. 당해 비행장의 장주규칙 및 관제절차 준수
4. 비행중 항공기 보안유지
5. 항공공시보 및 비행통제 구역 (금지 및 위험구역)의 숙지 이행
6. 승인 받은 항로 이탈 및 금지 구역 비행금지
7. 승인되지 않은 특수 및 폭력 비행금지
8. 기관고장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이 불시착할 수 있는 순항고도 및 속도 유지.

9. 비행중 악기상조건과, 조우되었을 때 항로를 변경하거나 인접착륙장 안전 대피

10. 최저고도 500피트 이하의 저공비행 또는 최고도 10,000피트 이상의 고공비행 금지 또는 제한
11. 항공기의 안전도를 상실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보다 더큰 위해가 예상될 때에는 임무를 포기하고 항공기의 안전에 우선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운항 30분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운항준비상태 확인 점검
2. 항로에 관한 최신의 항공 공시 사항
3. 항로상의 기상상태
4. 항공기의 내외부 점검
5. 비행계획서의 제출 (해당관제기관)
6. 기타 비행금지 구역내의 비행인가 확인

㉢조종사는 운항완료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계획된 운항종료시 임무수행 상황보고 (항공대상)
2. 운항중 발생한 항공기의 결함 및 고장상태를 정비사에 통보
3. 운항중 또는 특수 임무수행중 조우되었던 위험한 비행조건이나 기상상태의 보고 통보 (항공대 및 관제기관)

④ 다음 각호의 기상조건이나 이와 같은 기상조건으로 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항공대장 또는 조종사가 임무수행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할 수 있다.

1. 풍속이 30 노트 이상이거나 운고가 500 피트 이하 또는 시정 1,500 미터 이하일 때
2.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내에 각종 기상정보(태풍, 강풍, 강우, 강설, 악시정 교란기류, 뇌우등)가 발령될 때
3.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내에 심한 빙착이 예상되거나 실존할 때
- ⑤ 해상비행은 주간에만 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한 후 하여야 한다.
 1. 비상용 부주식 스킵트
 2. 탑승원 수대로의 구명 동의
 3. 비상식량(1인 3 식분)
 4. 방수통 신호등 및 휴대용 전등
 5. 해상구조 기관과의 통신유대 및 필요한 사항 숙지

⑥ 야간항공 소방활동은 항공기 및 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한다.

1. 공중 지휘통제, 주민대피, 공중 조명은 지상통제하에서 실시한다.
2. 고층건물의 인명구조는 착륙장과 조명시설이 설치되고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⑦ 항공기의 불시착할 때에는 조종사는 지체없이 인근 경찰서에 신

고하여야 하며, 현장 보존을 위한 경비 및 보안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항공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항공훈련) 항공대원의 기술 유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지속적인 훈련비행을 실시한다.

1. 현직 조종사에 대한 기술향상 비행은 월 4시간 이상의 주간비행과 년 4시간 이상의 야간비행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제임무 수행을 위한 비행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규 채용된 조종사는 비행경력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기중 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항공소방활동 비행을 실시한다.
3. 기중전환 비행을 완료한 신규 채용 조종사는 교관, 조종사 및 항공대장의 평가결과, 합격한 때에 한하여 비행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4. 교관 조종사는 회전의 비행시간 500시간 이상의 자로서 교관 교육을 이수한자 이어야 한다.

제 8 조 (시험비행) ① 시험비행은 항공기의 중요부품의 교환 또는 중요부분의 정비후에 실시하되 시험비행을 훈련비행과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제기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의 시험 비행은 다른 비행 계획에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행계획서) ① 비행계획서는 이륙하기 30분전에 조종사가 직접 작성 해당관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유선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비행작전반 (F.O.C)에 이륙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비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관제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탑승자의 준수사항) 항공기의 탑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때에는 조종사는 탑승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비행중 항로변경 또는 복수 비행요구 행위 금지
2. 항공기가 지상에 있거나 이착륙할 때 또는 연료냄새가 나거나 재떨이가 없을 때에는 금연
3. 임의로 좌석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4. 위험물 폭발물 또는 비닐문서 등은 항공기내에 탑재할 수 없다. 다만, 위험물 및 폭발물로서 공중수양이 불가피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항공기의 외부에 적재할 수 있다.
5. 항공대장 또는 조종사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탑승자에 대한 질문검색을 할 수 있다.
6. 탑승자는 무기를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제 11 조 (항공기의 지상안전 수칙) 헬기장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지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의 금연
2. 항공기 시동시에는 소화기 준비
3. 격납고 및 유류고 인근에서의 금연
4. 항공기 엔진 정지후 10분이상 경과후 연료 보급
5. 연료보급시 소화기 준비 및 접지선 접촉
6. 격납고에서의 전로 방출 금지
7. 계류장내에서는 인가된 유조 차량외의 차량 출입금지

제 12 조 (항공기의 적상유도) 항공기의 적상유도는 다음 각호에 의거 실시한다.

1. 항공기가 정공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
2. 유도장내의 장애물 유무 확인
3. 회전익과 회전익 간격 또는 물체간의 간격은 3미터이상 유지
4. 항공기 유도자는 회전익 끝으로부터 2미터 지상간격 유지

제 13 조 (피납양지) 항공기의 안전과 피납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류된 항공기는 시정장치가 되어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직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경비를 받을 수 없는곳에 착륙한 때에는 조종사는 그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불순분자에 의하여 피납이 예

상할 때에는 즉시 해당관제기관에 보고 하고 특수비행조작으로 반항, 이를 저지 하여야 하며, 제류중에는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 이를 거부하고, 거부기 실패되면 즉시 해당 항공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항공기 정치장 경비) 항공기 정치장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준한 경비 및 통제를 하여야 한다.

제 15 조 (항공기 운항 신청등) ①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항공대장에게 비행임무를 지시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기관에 운항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항공기 지원신청은 선택장비의 준비 및 수도권 비행금지 공역내외 비행인가와 운항계획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항공기 지원은 운항 30 일전까지
2. 각종 훈련 및 행사 지원은 운항 7 일전까지
3. 긴급 특별사항 및 귀빈공수는 운항 12 시간전
다만, 비행금지 공역내외 운항은 48 시간 전까지
4. 기타 행정지원은 운항 48 시간 전까지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지원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는

합승인원은 운항 10 분전에, 탑재할 파물은 운항 30 분전에 지정된 장소에 대기케 하거나 준비하여야 한다

제 16 조 (항공기의 정비) ① 항공대장은 매년 항공기의 점검정비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계획에는 일일 점검 정비와 수시 점검정비로 구분하되, 점검 및 정비방법은 항공기 제작회사의 정비교섭 (유즈 500 디) 에 의한다.

③ 항공대의 보유 기술능력으로 점검 정비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문 정비업체에 용역 점검 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은 항공기 및 그 부품에 대한 내항성유무에 대한 기술검사인 감항검사를 년 1 회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검사는 국가기능 자격증 소지자를 감항검사자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항검사자는 검사결과를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물품관리) 항공기 관리용 물품의 취득 사용 및 보관 또는 처분등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동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 조 (사고조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요원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사고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고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9 조 (항공유의 소모계정) 항공유의 소모기준은 시간당 113.5 리터 (휴즈 500 디 헬기) 로 한다.

제 20 조 (항공기의 급유) 항공기의 급유는 주기장 (駐機場) 에서 급유 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상 필요한 때에는 항공기의 착륙이 가능한 장소에서 급유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항 공 기 운 항 신 청 서

수 신 소방본부장

참 조 박 호 과 장

아래와 같이 항공기 운항을 신청합니다.

구 분	내 용
1. 운 항 일 시	
2. 운 항 구 간	
3. 운 항 목 적	
4. 탑 승 자	소속 직급 성명
5. 과 출	종류: 크기: 무게:
6. 중 요 사 항	
7. 협 조 부 서	전화번호: 성명:

19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코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 결
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동
법시행령 제 7 조의 2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인다.

1980.1.4

서울특별시장

○ 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거정 변경	대로	1	45	35 m	4,750 m	문래동광장	오류동광장	구로동 635 가각 및 개 봉동 144 ~ 산 39 간 300 m 위 직결경
	대로	1	45	35 m	4,750 m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272 호 (79.6.
25) 로 시설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제 272 호 (79.6.25) 로 지적승
인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계획 허

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4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동구장지동 647-23의 19 필지</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도시계획사업 (도로) 나. 중핵로진입로 신원농사 (부대진입로)</p> <p>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B = 20 m L = 40 m, A = 8,200 m²</p> <p>4. 사업시행자 주소 설명 : 육군 제</p>	<p>7789 부대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 80.1.10 나. 준공예정일 : 80.2.1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 별첨</p> <p>7. 위치 및 계획정면도 : 별첨 (생략)</p> <p>8. 농사실제도면 : 별첨 (생략)</p>
---	---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 적		소 유 자		판 계 자	
			공 부	매수지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강남구	649-23	답	81	81		비등기		
장지동	645-15	전	16	16	장지동 242	배홍섭		
	-11	"	10	10	"	"		
	648-1	전	21	21	"	"		
	546-7	답	45	45	"	"		
	-8	"	36	36	"	"		
	-9	"	151	151	"	"		
	-13	"	24	24	"	배동학		
	647-22	전	257	257	강남가락 410	이정자	성동구금호동 4가355	가등기 성동덕
	-26	"	33	33	"	"	"	"
	646-1	"	207	207	"	"	"	"
	647-21	"	83	83	"	"	성동구금호동 4가355	성동덕
	550-3	답	46	46	성동자양 222-11	이인순		
	-1	"	26	26	"	"		
	-2	"	11	11	"	"		
	549	"	219	219	강남마천 156	안중순		
	547-5	"	4	4	장지동 212	이갑대		
	546-15	잡	134	134	중구충무 4가 35-1	김세빈	2 중 등 기 전 영 필	
	545-1	잡	17	17	"	"		
계	19 필지		1,421 평	1,421 평		8 명		

◎서울특별시고시제 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건설부고시 제463호(79.12.10) 권한위임사항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10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	학교	성북구정릉동산 17-6 일대	7,375 명	

* 별첨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호
 도시계획시설(공항)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및 건설부고시제 463호(79.12.10)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1.10
 서울특별시장

○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성	김포국제공항	강서구공항동일대	6,364,800	증 1,260
변경	"	"	6,366,06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 제 5 호</p> <p>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권한위임사</p>	<p>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 1.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양동소매시장	강서구 목동 산 74-18 일대	341.6 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 제 6 호</p> <p>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 1.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시장</p>
--	--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신정제 2소매시장	강서구 신정 201-1,5	2,148 평 (649.77평)	
	신월소매시장	강서구 신월 597 일부	896.7평중 688 평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 제 7 호</p> <p>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도로)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관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물 고시</p>		<p>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0. 1.11.</p> <p>서울특별시장</p>					
<p>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조서</p>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새마을소매시장	강서구 화곡동 323-9 일대	997 평				
<p>나.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p>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미터	50미터	강서구 화곡동 323-9	화곡동 323-71	
변경	"	"	"	"	"	"	폐지
기정	소로	4	4미터	50미터	강서구 화곡동 323-73	화곡 323-80	
변경	"	"	"	"	"	"	폐지
<p>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 서울특별시고시 제 8 호</p> <p>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538 호 (79.12.31)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p>		<p>부고시 제 463 호 (79.12.16) 의 권한위임 사항에 외거 이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1980. 1.11.</p> <p>서울특별시장</p>					

○ 지적승인조사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건설	학교	도봉구 수유동 491-61일대	5,430명	수유중학교			
○ 도로변정조사							
구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m	284m	수유동 490-61	수유동 491-61	
변경	"	"	"	284m	"	"	소로폐지
기정	"	"	"	70m	수유동 491-61	수유동 491-134	
변경	"	"	"	70m	"	"	소로폐지
별첨 도면포시와 같음 (도면생략)							
<p>◎ 서울특별시 교시 제 9 호</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고시</p> <p>1. 서울특별시 교시 제 60 호 (74.5.1) 로 지적승인 고시된 도봉구 공릉동 329-27 의 도시계획사업 (도로) 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 교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하고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0. 1.1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공릉동 329-27</p> <p>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p> <p>다. 사업의 규모 - 폭 8m, 연장 63m, 면적 712㎡</p> <p>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도봉구 공릉동 329-27 신일산업 (주) 김덕현</p> <p>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p> <p>1) 착수예정일 - 사업시행 허가일로부터 7 일 이내</p> <p>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60 일</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p>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비고			
도봉구 공릉동	329-27	대	712㎡	(215.4명)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외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도봉구 공릉동	329-27	백	712㎡	공릉동 329-8 신일산업(주) 김덕현	

다. 사업계획 평면도 및 공사내역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0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 자동차 정류장 및 도로)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여객 자동차정류장 및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 16.

서울특별시장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여객자동차정류장	성동구 자양동 220 일대	1,653㎡	
변경	"	"	1,653㎡	폐지
기정	"	강동구 명일동 312 일대	2,298㎡	
변경	"	"	5,193㎡	2,895㎡ 추가확장

별첨 도면표시와갈음 (도면생략)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연장	시절	종절	비고
기정	소로	2	68m	강동구명일동 313	명일동 315	
변경	"	"	"	"	"	여객자동차정류장시설 결정지 내소로 폐지

별첨도면표시와갈음 (도면생략)

공 고

① 서울특별시 공고제 1 호

청계천 7가재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 호 (77. 6.30) 동 제 203 호 (77. 6.30) 및 동 제 86 호 (78. 3. 9)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동 제 48 호 (79. 2. 17) 로 시행인가변경 (기간연장) 된 청계천 7 가 재개발구역내 7 개지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중 사업기간을 변경코자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케 공한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건축국 재개발 1 과 및 각 지구 시장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거변권자는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

1980. 1. .

서울특별시 장

공 략 내 롱

가. 사업시행인가 변경사항

나. 공람기간

1980. 1. 4 부터 20. 2. 4 까지 (30 일간)

청계천 7가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 (기간연장) 사항

구 분	제 1 , 2 지구	제 3 , 5 지구
재 개발 사업 명 칭	청계천 7 가 제 1 , 2 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 7 가 제 3 , 5 지구 재개발사업
시 행 구 역 및 면 적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20-4 일대 1,433 평	과 동 217-39 일대 1,240.2 평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20-4	과 동 217-39
시 행 기 간	변경 전	1977.6.30 - 1979.12.31
	변경 후	1977.6.30 - 1980. 6.30
시 행 인 가 년 월 일	서울특별시고시 제 203 호 (77.6.30)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86 호 (78.3.9) 사업시행인가

구 분		제 1, 2 지구	제 3, 5 지구
시행자의주소 및성명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91 홍인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영갑	과 동 217-67 청계천7가제3, 5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김한주
비 고		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 (79.2.17) 사업시행인가 계획 변경 (기간연장)	동고시제 48 호 (79.2.17)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 (기간연장)
구 분		제 4 지구	제 6 지구
재개발사업명칭		청계천7가재개발사업	청계천7가 제6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구역및면적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39 일대 253.8 평	과 동 204-26 일대 636 평
주된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38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04-26
시행인가	변경 전	1978.3.9-1979.12.31	과 동
	변경 전	1978.3.9-1980.6.30	과 동
시행인가년월일		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 (78.3.9) 사업시행인가	과 동
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7-38 청계천7가 제4지구재개발 사업토지소유자 조현주 (4인) 대표	과 동 204-26 청계천7가 제6지구 재개발 조합 조합장 최석기
비 고		동고시제 48 호 (79.2.17)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 (기간연장)	과 동
구 분	제 7, 8 지구	제 9 지구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명칭	청계천7가 제7, 8 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7가 제9지구 재개발사업	청계천7가 제10지구 재개발사업

구 분	제 7, 8 지 구	제 9 지 구	제 10 지 구
시행구역및면적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0-20 일대 1,062.7 평	좌 동 213-34 일대 215.8 평	좌 동 220 일대 902.7 평
주원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20	좌 동 213-34	좌 동 220
시행기간	변경전	1978.3.9 - 1979.12.31	좌 동 1977.6.30 - 1979.12.31
	변경후	1978.3.9 - 1980. 6.30	좌 동 1977.6.30 - 1980. 6.30
시행기간년월일	서울특별시고시 제86호 (78.3.9)사업시행인가	좌 동	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 (77.5.30)시행인가
시행자의주 소명 및 성명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13-20 청계천 7 가세 7, 8 지 구재개발조합조합장 허용구	좌 동 213-34 청계천 7 가세 9 지구토지 소유자 6 인대표 최규영	좌 동 220 청계천 7 가세 10 지구 개발사업토지소유자 1 인대표 김진곤
	비 고	동고시 제 48 호 (79.2. 17) 사업시행인가계획 변경 (기간연장)	좌 동 동고시 제 48 호 (79.2. 17) 사업시행인가계획 변경 (기간연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2 호

시장 개설 허가 공고

시장법 제 4 조 및 시장차부처리규
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
항에 대하여 개설허가 하였고 시장
법 제 9 조에 의거 공고함.

1979.12.

서울특별시 장

다 음

1. 허가번호: 제 26 호

2. 시장명: 월계종합시장
3. 대표자: 월계종합상개주
대표이사: 전영환
4. 소재지: 서울도봉구월계동 110-3
5. 허가기간: 79.12.31 ~ 85.12.30

◎ 서울특별시 공고제 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99 호 (79.12.1)
로 지적 승인된 도봉구 하계동산
16-38 외 5 필지에 새광산업 전수
학교 신축 및 운동장 확보를 위

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10
서울특별시 장

다 음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하계동 산 16-38 의 5 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세광산업전문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다. 사업규모 및 면적 - 9,554㎡ (2,890평)

라.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도봉구하계동산 16-38 세광산업전문학교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사업실시계획인가 7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 또는 문의 하기를 바란다.

도 지 조 서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 고
산 16-4	임	39,868	서대문구홍제동 332-12	최정식의 2인	주소불명 (대장 및 등기부등본무)
산 16-19	임	3,769	서대문구녹번동 28-24	임 장 호	
산 16-30	무	무	무		
산 16-38	임	7,170	성동구성수동 13-441	김 광 철	
28-4	대	79	28-4	이 명 숙	
28-7	대	99	28-7	이 명 숙	

◎ 서울특별시 공고제 4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및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 250 호 (78.5.29) 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동교동 간선하수도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요청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제 25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80. 1.
서울특별시 장

- 공 랑 개 요 -

1. 사업장의 위치

마포구광원동 346-32호 433-7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및 도로)

나. 동교동 간선하수도 공사

3. 사업의 규모

암거 4mX3mX3연, L=623.3 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80.1 -

80.7.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 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없음

◎서울특별시공고제 5 호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허가들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0. 1. 10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제 992 호

2. 허가일자: 1974. 11. 4.

3. 제조업체명: 코오롱 중합전기 (주)

4. 소재지: 서울 도봉구 상암동 230

5. 대표자: 임 승 업

6. 규격번호: KSC 4202

7. 품명: 저압 3 상 유도전동기

8. 종류등급: 전제 E 중보용 능력 200V

4P, 0.75, 1.5, 2.2kw, 6P, 2.2 kw

9. 취소사유: KS 표시허가자진발납

10. 취소일자: 1980. 1. 10

◎서울특별시공고제 6 호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시허가들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0. 1.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제 733 호

2. 허가일자: 1972. 12. 22

3. 제조업체명: 삼영화학공업 (주)

4. 대표자: 이 충 환

5.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370-1

6. 규격번호: 3502

7. 품명: 경질염화비닐말판

8. 종류 및 등급: 32 골판, 63 골판, 76 골판, 130 골판
 9. 취소사유: 표시허가자진반납
 10. 취소일자: 1980. 1.

◎ 서울특별시공고제 7 호

도시계획사업 (화물자동차정류장)
 공 사 완 료 공 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266호(79.6.22)로 도시계획사업 (화물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된 동대문구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1 부락 및 1-2 부락의 토지에 대한 동부화물자동차 터미널 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정류장 부지정지공사 및 포장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85조 및 동법 57 조의 2 건설부고시제 463호(79.12.10)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1, 1-2 부락
2.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 (화물자

동차정류장)

3. 사업의 규모: 20,539.9 평방미터 (10,980 평중 6,224.20 평)
4. 사업의 시행자: 주식회사 동부와물자동차터미널 대표이사: 박 승 순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
 가. 착공일: 79. 7. 20.
 나. 준공일: 79. 12. 31.
6. 공사완료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0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246호(79.6.8)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 및 동법제 57 조의 2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63 호 (79.12.10)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1. 15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사업완료내역)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19-40 에서 성내동 355-8

- 2.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 (도로 , 하수도) (통합청사 진입로 개설공사)
- 3. 사업규모 : 1) 도로개설 : 폭 20미터
연장 : 385미터
2) 하수도부설 : 암거 35미터 , 홍관 : 505미터
- 4.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 5. 사업시행기간 : 79.5.17-79.8.25
- 6. 준공도면 : 생략

- (도시계획사업완르내역)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3-3 부근
- 2.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 통합청사신축공사 (토목분야)
- 3. 사업규모 : 토광 20,763
하수암거 100 (2.5 × 3 × 1 번)
홍관 D = 600 , L = 282.5
녹지경계석 500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 5. 사업시행기간 : 79.4.23-79.9.23
- 6. 준공도면 : 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 호

도시계획사업 (공용의청사) 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제 191호 (79.5.8) 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제 57 조의 2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463 (79.12.10)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1980. 1. 1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 호

K S 표시된 가려소공고

-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 S 표시허가 취소 하였기 헌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

1980. 1. .

서울특별시장

구분	회사명	신진밸브(주)	삼협밸브(주)	신진정공사	삼부정공사
1	허가번호	제009,1010,1354,1355	제1465,1466,1467	제 1191,1192	제467,872,1666,1666,16
2	허가일자	74.12.14,76.11.17	77.5.27	75.11.18	71.1.14,74.8.9, 78.6
3	제조업체명	신진밸브(주)	삼협밸브(주)	신진정공사	삼부정공사
4	대표자	박찬언	김약환	강태환	최명규
5	소재지	영등포구 가리북동 444	영등포구 신길동 66-9	강서구 등촌동 304-3	영등포구 분래 6 가 33
6	규격번호	KSB 2301,2303,2312 2351,2353	KSB 2301,2303, 2312	KSB 2351,2353	KSB 2351,2353, 2301,2303,2312
7	품명	청동 5kg/cm ² 나사식그로브밸브 " 게이트 " " 앵글 " 주철 10kg/cm ² 후렌지형 그로브밸브 게이트밸브	청동 5kg/cm ² 나사식그로브밸브 " 게이트 " " 앵글 "	주철 10kg/cm ² 후렌지형 " 그로브밸브 " 게이트밸브	청동 5kg/cm ² 나사식그로브밸브 " 게이트 " " 앵글 " 주철 10kg/cm ² 후렌지형 " 그로브밸브 " 게이트밸브
8	종류및등급	2종	2종	2종	2종
9	취소사유	규격 폐지로 인한 자진반납	좌동	좌동	좌동
10	취소일자	80. 1.	80. 1.	80. 1.	80. 1.

◎서울교위공고제 1 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지급공고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지급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한다.

- 수당지급대상자
공립 초, 중등 교원으로서 지급
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
가. 연 령
1) 60세 이상

<p>2) 신체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 이상</p> <p>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통신)</p> <p>1) 30년이상</p> <p>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p> <p>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자</p> <p>나) 재직중 각급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자</p> <p>다) 재직중 시, 도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자</p> <p>2. 수당지급일: 1980년 2월 29일</p> <p>3. 신청기간: 1980. 1. 13-1. 22(10일간)</p> <p>4. 신청절차</p> <p>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등을 구비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독청</p>	<p>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한다.</p> <p>5. 지급액</p> <p>기초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p> <p>6. 지급절차</p> <p>가. 대상자 결정통지</p> <p>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 또는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한다.</p> <p>나. 수당지급장소</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p> <p>7. 기타사항</p> <p>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 또는 당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1979. 12.</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관</p>
---	---